

복지이슈 FOCUS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기본소득
특별호 1

2020. 7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연일 언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쟁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기본소득이 소개된 바 있지만 체계적인 내용 이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복지이슈 FOCUS 특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주 간격으로 발간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발간일정 〉

- 1호(7.13).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 2호(7.30). 기본소득의 다양한 자원들과 의미(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 3호(8.20). 기본소득과 현재 복지정책의 관계(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 4호(9.10). 기본소득과 빈곤층(백승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 5호(9.28). 기본소득과 노인(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6호(9.28). 기본소득과 장애인(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집필**

이지은 |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rosmari789@gmail.com)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37

Fax: 031-898-5935

- 코로나19 이후 ‘재난기본소득’ 지급논의가 가시화되었고,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 속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들이 혼용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 및 특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본소득은 “자산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이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은 기본소득의 개념 중 가장 핵심적인 원리임
-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①사회적 지분급여 ②참여소득 ③범주형 기본소득 ④부의 소득세 등임
 - ① **사회적 지분급여** : 자산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공정한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으로 청년기로 넘어갈 때 상당수준의 일시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보편성과 정기성의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차별성이 존재함
 - ② **참여소득**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무조건성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차이가 존재함
 - ③ **범주형 기본소득** : 특정 범주에 속한 개인에게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보편성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차별성이 존재함
 - ④ **부의 소득세** : ‘보편적 자산조사’를 통한 보편적 세금공제제도 방식으로 운영되며, 무조건성, 개별성, 보편성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의 과정이 필요함

I 들어가며

■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함

- 2016년 서울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the 16th BIEN Congress) 개최, 같은 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실시함
 -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로써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2019.04.~)
- 201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생애주기별 배당·특수배당·토지 배당에 기초한 기본소득안을 공표함
-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농민기본소득과 유사한 공약들을 발표, 2019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시작한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난기본소득지급 논의가 가시화되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됨

-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및 소득상실 위기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음
- 최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구단위로 가구원수별 차등하여 지급함(99.5% 지급완료, 2020년 6월 8일 기준)

■ 2020년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면서 개념적으로 기본소득인 정책과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함

- 아래에서는 기본소득 개념과 특징(2장),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 검토(3장), 기본소득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논점들을 제시(4장)하며 글을 마무리함

II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

- 보편적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이전을 의미함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이하 BIEN)¹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란 “자산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이전”임(2016.07.)
 - 보편적 기본소득은 1)무조건성(unconditional), 2)보편성(universal), 3)개별성(individual), 4)정기성(periodic), 5)현금지급(cash payment)을 특징으로 함
 - 특히,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은 기본소득 개념의 가장 중요한 원리임

〈표 1〉 보편적 기본소득의 특징

| 특징 | 내용 |
|------|---|
| 무조건성 |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능력을 증명하거나 구직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함 |
| 보편성 | 기본소득은 자산조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함 |
| 개별성 | 기본소득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지급함 |
| 정기성 |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함 |
| 현금지급 | 기본소득은 바우처나 현물이 아닌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함 |

- BIEN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에 지급수준인 충분성을 포함시키진 않았으나, 별도의 정책목표로 명시하고 있음
 - “물질적 빈곤을 제거하고 모든 개인의 사회적·문화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규모와 주기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BIEN 규약에 명시하고 있음(2016.07.)
 - 지급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을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이라고 부르기도 함(Fitzpatrick, 2000)

1 1986년 서유럽의 몇몇 경제학자·철학자·사회과학자들이 모여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BIEN)를 결성한 뒤, 이후 여러 국가에서 사람들이 모여면서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로 명칭이 변경됨. 약 30여 년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 관련 연구와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정의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권위가 인정됨.

- 기본소득과 현재 사회보장제도와와의 차별성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며, 서로 대체관계라 볼 수 없음
- 20세기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는 ‘기여의 원리’에 따른 사회보험제도와 ‘필요·욕구의 원리’에 따른 사회부조제도가 중요한 축으로 구성됨. 기본소득과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차별성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에서 나타남
 -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역사적으로 가족수당(가구단위 지급)에서 시작하여 아동수당(개인단위 지급)으로 발전하였으며, 권리의 개념이 보다 강조됨

〈표 2〉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비교

| 구분 | 무조건성 | 보편성 | 개별성 | 예시 |
|------|---------------------|---------------------|--------|--------------|
| 사회부조 | 자산조사 근로조건 및 구직의사 | 빈곤층 | 가구(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사회보험 | 기여 | 기여자 | 개인 | 국민연금 |
| 사회수당 | 인구학적 특성 | 범주형 (아동/청년/노인 등) | 개인 | 아동수당 |
| 기본소득 | 조건없음 | 모든 사람 | 개인 |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

- 현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 취약 계층 또는 중위소득·저소득층의 처치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나 수당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BIEN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음(2016.07.)²

2 BIEN의 기본소득 정의에는 기본소득의 목적, 지급수준, 지급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적 공백’이 있음(금민, 2020). 이에 대해 기본소득한 국네트워크(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에서는 기본소득의 목적(정관 제2조)을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배당’으로 명시하고 있음. 공유부란 모두의 것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뜻함. 즉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과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을 의미함

Ⅲ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정책들

■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로 사회적 지분급여, 참여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를 검토

- 보편적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의 5가지 특징에 따라, 사회적 지분급여, 참여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를 검토함
 - 부의 소득세의 경우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근 언론 등에서 ‘기본소득의 우파버전’으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간략히 검토함
- 사회적 지분급여, 참여소득,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함께 모두 20세기 분배체계를 비판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안 정책들임

■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 20세기 복지국가는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 (social risks)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왔음
- 사회적 지분급여는 20세기 복지국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일시금을 지급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정책
 - 모든 시민들이 21세가 되었을 때 4년에 걸쳐 매년 2만 달러씩 총 8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Ackerman & Alstott(1999)에 의해 제안되었음
 -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에는 대학교육, 창업, 주택마련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며, 이 시기의 투자는 한 개인의 성인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이를 통해 기회의 평등과 거시 자유(macro-freedom)³를 구현할 수 있음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는 모든 개인에게 사회적 유산을 제공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Ackerman & Alstott, 1999), 보편성과 정기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3 미시자유(micro-freedom)란 일상적인 자유를 말한다면 거시자유란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능력을 포함함(Ackerman & Alstott, 1999)

- 사회적 지분급여는 청년기에 지급되는 반면, 기본소득은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보편성 개념에서 차이가 있음
- 기본소득은 일정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만, 사회적 지분급여는 특정시점에 상당량의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 사회적 지분급여제도는 최근 기초자산제 혹은 기본자산제로 발전됨

- 새출발 지원금(Le Grand, J.), 부의 자본세(Sandford, C. T.), 보편적 자본배당(Piketty, T.), 기본자본(White, S.)으로 불리고 있음

○ 기초자산/기본자산 제도는 자산불평등 심화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일시금 방식의 자본 배당이 핵심 개념임

-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피케티(2020)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사적소유에 대한 누진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25세의 청년 개인에게 보편적인 자본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제안함⁴
- 2020년 총선 국면에서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공약하였음
- 정의당은 2017년 대선에서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하고, 2018년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청년사회상속법안」을 제출함. 2020년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를 공약함
- 주요 내용으로는 ①청년기초자산제는 이전의 청년사회상속제를 강화한 안으로서, 심화된 불평등에 대처하고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임. ②모든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되,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 등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함. ③청년기초자산 급여는 일시금이 아닌, 3년 동안 분할 지급함. ④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은 청년의 경우, 청년기초자산급여를 환수함

■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는 기존의 소득활동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가사 및 돌봄 노동, 교육 및 구직활동 등이 포함됨

⁴ 구체적으로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의 약 5%의 세수로 25세에 달한 청년 개인에게 성인 평균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함(피케티, 2020: 1038)

- 참여소득의 오랜 주창자인 앳킨슨(Atkinson, 1996, 2015)은 참여소득을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징검다리로 바라봄
 - 앳킨슨(2015)은 최근 저술에서 기본소득을 받는 대가로 최소한 일주일에 35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참여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보았음
-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은 ‘무조건성’에서 차이가 있음
 - 참여소득은 노동의 범주를 유급노동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까지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실제 실행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이 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 청년수당은 참여소득의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음
 - 서울시 청년수당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여러 사업 중 청년활동지원사업에 해당하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월 50만원(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제도임
 -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쟁이 이뤄졌고, 청년지원 활동에 ‘구직 활동을 연계할 것인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음
 - 급여의 사용처를 취·창업과 관련된 활동영역으로 제한하자는 입장(복지부)과 용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말자는 입장(청년단체)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음
 - 결과적으로, ‘구직지원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서울시 청년수당은 ‘근로 및 구직활동 조건’이 완화되었고, ‘활력’과 ‘활동’이라는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음

■ 범주형 기본소득(categorical basic income)

- 범주형 기본소득은 청년·농민 등과 같은 ‘특정 범주에 속한 집단’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말하며(Parijs and Vanderborght, 2017), 보편성 측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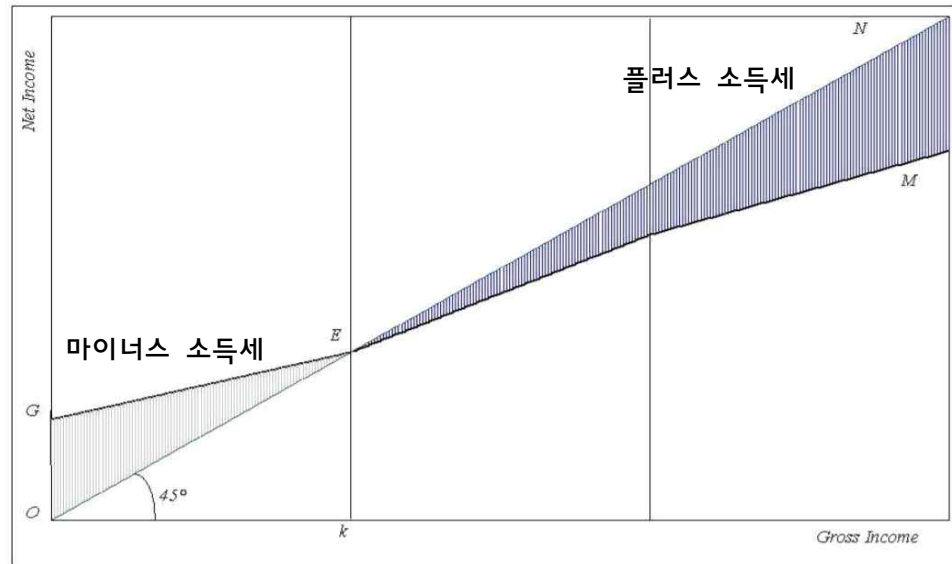
- 현 사회보장제도에서 운영되는 사회수당과 범주형 기본소득의 공통점은 특정 인구집단에 속하면 무조건적·개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음
 - 사회수당은 20세기 전통적 복지국가의 틀 안에서 형성된 보완적 제도라면, 기본소득은 BIEN 정관 제2조(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새로운 분배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 그러나 범주형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은 서로 대립하는 정책이 아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례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내용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일부 요소를 가지고 있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만 24세 개인에게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 청년배당을 확대·계승한 정책으로서, ① 무조건성 ② 준보편성 ③ 개별성 ④ 준정기성 ⑤ 준현금성을 특징으로 함

■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 부의 소득세는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고 알려져 있음
 - 부의 소득세는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신자유주의의 주창자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62, 2013)을 통해 대중화 되었음
 - 부의 소득세 개념은 프랑스 경제학자인 오귀스탱 쿠르노(Augustin Cournot, 1838)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이후 밀턴 프리드먼(1962)은 복지국가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소개하였음
 - 제임스 토빈(James Tobin, 1965; 1966; 1967; 1968)이 좀 더 자세히 논의하였으며 그의 동료들은 부의 소득세를 근로유인을 유지하면서도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루었음
- 부의 소득세는 보편적 자산조사(universal means-testing)를 통한 세금공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부의 소득세는 조세와 급여/지원금을 연계시키는 방식임. 특정 소득수준이하의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최저생계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소득세’를 부과함

- 실제로는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원리임(〈그림 1〉 참조)

〈그림 1〉 선형 부의 소득세(Friedman, 1962)



△OGE: 마이너스(-) 소득세, △EMN: 플러스(+) 소득세, K: 최저생계소득

출처: Tondani, D. (2009: 7)에서 필자가 가공

○ 부의 소득세는 기본소득의 특징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 부의 소득세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며(무조건성 위반), 실제로 혜택을 받는 집단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이고(보편성 위반), 가구단위로 지급(개별성 위반)하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함
- 부의 소득세의 단점은 ①모든 사람에 대해 자산조사를 위한 자료확보의 어려움 ②부의 소득세는 보통 사전 자산조사, 사후 보조금 지급(연 단위)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이 나오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의 소득세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실험되었고, 온타리오 주의 실험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로 보기 어려움(Torry, 2020:23)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를 미혼인 경우 연소득 3만 4,000달러 이하, 기혼인 경우 4만 8,000달러 이하인 사람들을 모집하였음. 지원금은 미혼의 경우 1만 7,000달러, 기혼인 경우 2만 4,000달러를 지급하되, 시장소득이 생길 경우 시장소득의 50%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의 소득세 형태의 실험을 실시함

-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실험은 가구단위 지급, 자산조사 실시라는 특징으로 인해 ‘기본소득’ 실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표 3〉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정책들

| 구분 | 보편적 기본소득 | 사회적 지분급여 | 참여소득 | 범주형 기본소득 | 부의 소득세 |
|------|----------|----------|------|----------|--------|
| 무조건성 | ○ | ○ | △ | ○ | |
| 보편성 | ○ | △ | ○ | △ | |
| 개별성 | ○ | ○ | ○ | ○ | |
| 정기성 | ○ | | ○ | ○ | ○ |
| 현금지급 | ○ | ○ | ○ | ○ | ○ |

IV 기본소득의 실현

- 기본소득을 현실에서 제도설계할 때, 고려해야할 세부 요건들이 존재함
 - 보편성의 원칙에서 ‘모든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법적 시민 혹은 상시 거주민(거주요건), 외국인 포함 등의 이슈
 - 개별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
 - 정기성과 관련해 얼마나 정기적으로 지급할 지, 현금지급 이외에 지역화폐를 활용할 것인지 등
 - 기본소득과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대립관계가 아니며,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존의 제도와 보완적으로 설계될 수 있음
 - 다만, 실현단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정책들은 조정·대체될 수 있음
- 기본소득의 목적과 지급수준, 자원마련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으며, 이는 정치적 영역임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에서는 기본소득의 목적을 ‘공유부에 대한 배당’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을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함
-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과정의 필요하며, 더불어 세부 정책안이 개발이 필요함
- 사회적 지분급여, 참여소득,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함께 새로운 분배제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과 토론이 필요
- 사회적 지분급여, 참여소득,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의 원칙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일부 차이가 있음
 - 사회적 지분급여와 기초자산제는 자산불평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기 시점에 일시적 자본배당 지급이 논의됨
 -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위화감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요구함
 -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개별적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임
-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분배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이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임
 - 보편적 기본소득의 핵심특징을 공유하는 유사정책들의 도입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분배정치의 연대’를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임
 - 이 과정에서 무조건성’을 더 강조하는 ‘범주형 기본소득’, 보편성을 더 강조하는 ‘참여소득’, 혹은 급여수준이 낮지만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을 모두 충족시킨 ‘부분기본소득’ 중에서 어떤 제도를 먼저 도입할 것인지와 관련해 토론의 여지가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은 그 특징이 보편적 기본소득과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음. 그러나 새로운 사회전환을 추동한다는 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전략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 아카데미.
-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출판사.
- 액커만, 브루스·알스토틸, 앤·반 바레이스, 필리페 외 (2013). 『분배의 재구성』.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나눔의 집. (원서출판 2006)
- 백승호 (2020). “서울시 청년수당’의 현재적 의의와 전망”. 『계간기본소득』, 2020년 4월호(제4호), 31-41.
- 서정희. (2020).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과 청년기초자산: 무엇을 위한 기초자산인가?”. 『계간기본소득』, 2020년 4월호(제4호), 24-30.
- 스탠딩, 가이. (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창비.
- 엣킨슨, 앤서니. (2015).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영덕 역. 글항아리. (원서출판 2015)
- 이지은.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현재적 의의와 전망”. 『계간기본소득』, 2020년 4월호 (제4호), 42-51.
- 조민서. (2019). “실업과 현금지급의 사회정치: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피케티, 토마.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안준범 역. 문학동네. (원서출판 2019)
- 판 파레이스, 필리프·판데르보흐트, 야니크 (2018).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흐름출판. (원서출판 2017)
-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Palgrave Macmillan: UK.
- Tondani, D. (2009). “Universal basic income and negative income tax: Two different ways of thinking redistribution”.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8(2), 246-255.
- Torry, M. (2019).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pp. 15-29). Palgrave Macmillan.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org/>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korea.org/>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기본소득 특별호1 2020-(특)-01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